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요 에너지경비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적용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15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주요 에너지경비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적용	3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유형 명시	9
※ 참고자료	15
1.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경과 및 성과	15
2. 납품대금 연동 절차	16
3. 에너지 비용 관련 통계	17
4. 전기료, 용수 등 공공요금 현황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주요 에너지경비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적용(안 제2조 제12호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요금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u>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u>가격</u> 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 <u>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u> ----- ----- ----- -----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u>조정요건</u>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 ----- <u>주요 에너지</u> <u>경비, 조정요건</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생략)

현행법¹⁾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²⁾’이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³⁾하고 있음.

1)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제19176호, 2023.1.3. 개정, 2023.7.4. 시행)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인 ‘주요 원재료⁴⁾’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하며,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⁵⁾되나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3년간 6차례 변동이 있었는데⁶⁾, 2023년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약 29.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참고자료 4)⁷⁾.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⁸⁾

3)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9

6) <전기요금 구조(중소벤처기업부)>

- 현재 전기요금은 고정된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

* (기후환경요금) RT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 부과(‘21년~)

(연료비조정요금) 석탄, 천연가스,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 반영(‘21년~)

-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을) 기준 최근 10년간 총 7차례, 최근 3년간 6차례 변동

* (산업용 전력 변동 시점) ‘13.11월, ‘21.1월, ‘22.4월, ‘22.7월, ‘22.10월, ‘23.1월, ‘23.5월, ‘23.11월

7) 원유, LNG, 석탄 등과 같은 연료의 국제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이라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함. 2022년 중반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확대 및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급증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이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음(박충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22호, 2023. 8, pp.1-2).

8)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에너지 요금이 급등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으로서는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자료⁹⁾에 따르면, 열처리 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20% 수준으로 나타나(참고자료 3)¹⁰⁾,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의 정도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당초 납품대금 연동 제도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임. 에너지요금은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며, 물품등의 제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함. 따라서 에너지요금이 납품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9) <뿌리업종 조합원사 에너지비용 분석>

- 추진배경: 중소 뿌리업체의 지속적인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 건의와 다르게 국가승인통계상 중소기업의 전기료 사용 비중이 낮은 원인 및 실태 분석
- 조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기간: '24. 4. 8 ~ '24. 4. 15
- 조사방법: CRETOP(한국평가데이터) 정보를 통한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 조사
- 조사대상: 5개 뿌리산업 회원사(673개) 중 283개사 선정

10) 다만, '2023년 뿌리산업 실태조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4.1) 결과에서는 6대 기반 공정기술 업종에서 제조원가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비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제조원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기준(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으로 산출되어 업종별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유리하나 기업규모(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품목·업종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 변동과 별개로 에너지요금의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요금에 대하여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이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 취지,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제도를 실제 운영·집행하여야 하는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료 등 에너지 관련 경비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에 대한 경비 인상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하나, 공정위 등 다른 관계 부처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¹¹⁾을 진행 중이며, 향

11)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연구용역(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 용역내용

- 에너지 가격 변동 양상,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현황 등 조사 및 검토

* 제조원가명세서상 명확한 전력비 위주로 검토하되 「에너지법」상 그 외 에너지 비용(연료, 열 등) 고려

-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의 적합성 검토 및 제도의 운용 방안 모색

-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방안 관련 고려사항 점검 및 시사점 제시

후 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 관련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경우 원재료에 비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¹²⁾,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적용 가능한 납품대금 조정협의¹³⁾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재료와 달리 에너지 요금과 같은 경비성 비용은 제조물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제조물의 가격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에 계속 반영하게 된다면 최종 제조물의 가격 상승으로

○ 수행기한: ~ '24.12.13

12) 전기위원회 등 공적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가격 등이 결정되므로 온전히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수시로 바뀌는 성질의 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임.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경비성 비용은 자체 노력(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 에너지절약 등) 또는 정부 정책 이용(분할납부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함.

한편, 납품대금 연동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53호,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27호)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유형 명시(안 제21조제4항)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 -----

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⑤·⑥ (생략)	----- -----. 1. ~ 5.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납품대금이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등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⑤·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수탁·위탁거래 중 위탁기

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¹⁴⁾.

이는 현행법상 수탁·위탁거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간 거래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나 소액 거래의 경우 연동 적용으로 얻는 이익이 제도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고, 단기 거래와 같이 납품대금의 변동이 어느 정도 예측되어 연동 적용의 필요성이 낮거나 수탁기업이 연동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납품대금 연동 적용의 예외사항 중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른 미적용의 경우, 위탁기업이 거래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과 같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 당시 논의된 바 있음. 이를 예방 및 보완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14)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따라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조에 위탁기업의 탈법행위(脫法行爲) 금지를 함께 규정하였음.

‘탈법행위’는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¹⁵⁾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⁶⁾」,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¹⁷⁾」 등에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는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기업의 제도 적용 회피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안 제21조제4항)은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나 연동 미적용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다면 ‘쪼개기 계약’, 연동제 미적용 합의 요구 등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15)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그 밖에 ‘직접 효력규정(강행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됨(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2, p137, 이춘원, “탈법행위에 관한 소고”에서 재인용, 한국사법학회(비교사법 제20권1호), 2013, p40).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탈법행위는 간접적·우회적 법률 회피행위에 해당하여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률로는 탈법행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그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행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음¹⁸⁾.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6.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1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이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침익적 처분이 가능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공감하나, 제도 시행초기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법행위 유형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거래 현실을 간과한 법 집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탈법행위의 판단은 전문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명확한 행위를 대통령령에, 그 밖에는 고시 등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탈법행위 유형은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면서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할 경우 우회적인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탈법행위는 법률 위반 여부의 판단이 복잡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한 만큼 집행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특수성, 계약관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예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경과 및 성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경과

-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로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현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본격 시행(’24.1.1)

*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23.1.3)·시행(’23.10.4) → 계도기간(’23.10.4~’23.12.31) → 본격 시행(’24.1.1)

□ 실적 및 성과

① 동행기업 모집

- 연동제의 본격 시행 전부터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10,518개사(위탁 443, 수탁 10,075) 모집
- 동행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비율은 ’24.8월말 기준 36.0%로 ’23년말 18.9% 대비 17.1%p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동행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현황 >

(단위 : 개사, %)

구 분		2023년말	’24.8월
동행기업	10,518(100.0)	1,983(18.9)	3,790(36.0)
위탁기업	443(4.2)	238(53.7)	286(64.6)
수탁기업	10,075(95.8)	1,745(17.3)	3,504(34.8)

② 로드쇼(현장설명회) 개최

-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23.2)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237회 개최(’24.9.11일 기준)

③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지정(’23년 1개소 → ’24년 5개소)

- 전국적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연동제 홍보·교육 제공 및 현장의 수요 파악(’24.3월~)

* 연동지원본부: 대·중소협력재단(총괄),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④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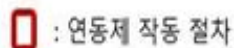
- 약정 체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①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②연동제 적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수탁기업) 원가정보가 위탁기업에게 공유되면 향후 납품대금 감액 요구 등 발생 우려 (위탁기업) 수탁기업의 정보를 신뢰하기 곤란, 불필요한 기술탈취 의혹·분쟁의 우려

⑤ 가이드라인 마련

-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FAQ 등을 마련하여 현장 지원

납품대금 연동 절차

☐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① 2024년 뿌리산업 조합사(중소)의 전력비 비중 조사(중소기업중앙회)

- (조사개요) 5개 뿌리산업 조합 회원사 대상 조사('24.4월)

< 주요 5개 뿌리산업 조합 회원사 중 조사 대상 > (단위: 개사)

구 분	단조	주물	열처리	표면처리	반월패션	합계
조합원사	49	197	73	284	70	673
조사대상*	27	98	52	88	18	283

* 조합원사 중 대기업·조합, 이중 업종(기계 제조, 약품 제조 등), 데이터 부재 기업 등 제외

- (주요 조사결과) 열처리 업계 평균 전력비 비중 20% 수준

< 주요 5개 뿌리산업 조합 회원사 조사 결과 > (단위: %)

	구 분	단조	주물	열처리	표면처리	반월패션
2021	전력비 비중 평균	5.59%	8.95%	19.69%	5.03%	3.92%
	전력비 10% 이상 업체 비율	3.85%	39.58%	82.69%	6.98%	0.00%
2022	전력비 비중 평균	5.57%	8.41%	20.20%	5.30%	3.75%
	전력비 10% 이상 업체 비율	0.00%	32.22%	80.00%	11.63%	0.00%

* 반월패션(염색가공 업종)의 경우 스팀 관련 비용이 수도료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기됨

구 분	2021	2022
대상업체수(개)	17	17
전력비 평균	3.92%	3.75%
수도료 및 기타비용 평균	18.48%	22.56%
수도료 및 기타비용 합계 평균	22.41%	26.31%

- (중기중앙회 입장) 에너지 경비에 대한 연동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2023년 뿌리산업 실태조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조사개요) 뿌리기업 61,108개사 대상 조사('24.1월)

* 뿌리산업법 제8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법정통계

< '23년 뿌리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 > (단위: 개사)

업종명	6대 기반 공정기술 뿌리산업							기타*	전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모집단	37,233	1,909	9,634	6,216	10,130	8,097	1,247	23,875	61,108
표본	4,992	657	766	985	1,223	855	516	4,008	9,000

* 기타: 소재다원화 공정산업(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지능화 공정산업(로봇, 센서 등)

- (주요 조사결과) 6대 기반 공정기술 업종에서 제조원가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 6대 기반 공정기술 업종의 제조원가 대비 에너지 경비 비율 > (단위: 개사)

업종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력비 비율(%)	3.7	2.3	1.8	1.5	2.7	4.5
가스·수도비 비율(%)	0.1	0.1	0.5	0.3	0.4	1.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공요금 개요

- **(정의)** 주무부 장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
- 주무부 장관은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물가안정법 제4조)
- **(산정 원칙)**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해야 하며 산정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함이 원칙
- * 다만, 요금의 안정성,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 운영 가능(기재부훈령, 공공요금산정기준)

② 수도 요금

- **(산정 절차)** 지자체는 조례 개정,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규정의 개정 신청 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소속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기재부 협의를 거쳐 승인
- *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長), 산업소비자 단체 등 6명, 물 전문가 6명, 수자원공사 등 2명 총 15명
- **(변화 추이)** '22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747.8원/㎥이며 '13년 660.4원/㎥ 이후 증가 추세(상수도 통계, 환경부)
- 최근 수도사업자들은 수도사업 적자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 중
- * 부산시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10월에 7% 올라('24.7.10, 부산KBS)

< 연도별 전국 평균 수도요금 변화 추이 >

(단위 : 원/kWh)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요금*(원/㎥)	660.4	666.9	683.4	703.4	723.3	736.9	738.6	718.9	720.8	747.8
생산원가(원/㎥)	849.3	876.5	881.7	867.7	898.2	914.3	944.6	976.6	989.2	1,027.5
현실화율(%)	77.8	76.1	77.5	81.1	80.5	80.6	78.2	73.6	72.9	72.8

* 수도요금 : 수도요금 총 부과액(원) / 연간 부과량(㎥)

③ 전기 요금

- **(산정 절차)**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정의 인가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소속 **전기위원회*** 심의, 기재부 협의를 거쳐 결정
- * 비상임 위원위원장 포함 8명(교수,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상임위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1명 등 총 9명
- **(변화 추이)** '23년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약 **29.5% 인상**, 향후 한전 적자 누적 등으로 추가 인상 전망(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
- * 200조 빚더미 앉은 한전..."더 감당 못해" 전기료 인상 호소('24.5.16, 중앙일보)

< 연도별 전국 평균 전력단가 변화 추이 >

(단위 : 원/kWh)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택용	125.1	123.7	121.5	108.5	106.9	105.0	107.9	109.2	121.3	149.8
산업용	106.8	107.4	107.1	107.4	106.5	106.6	107.4	105.5	118.7	153.7

* 전력단가 : 전력판매수입(원) / 판매전력량(kWh)